

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6-85호

우암2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

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-337호(2006.09.27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, 제2010-412호(2010.11.10.), 제2011-430호(2011.11.23.) 및 제2016-306호(2016.09.21.)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,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17-23호(2017.03.29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, 제2017-100호(2017.11.01.) 정정고시 및 제2019-7호(2019.01.23.) 세목정정고시, 제2019-75호(2019.07.03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260호(2022.07.06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,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-91호(2022.09.14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,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-403호(2022.10.26.), 제2025-337호(2025.8.27.)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,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-133호(2025.11.05.) 및 제2025-144호(2025.11.26.)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된 남구 우암동 129번지 일원의 우암2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6년 6월 17일

부산광역시 남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(변경없음)

-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정비사업의 명칭 :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(변경없음)

- 위치 :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129번지 일원
- 면적 : 148,912.0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(변경없음)

- 성명 : 우암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유창
- 주소 :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168-1, 3층(우암동)
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인가일로부터 120개월 이내 (변경없음)
5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일 : 2017년 3월 24일(2025년 6월 12일)
6. 변경사유 및 내용

○ 기반시설(도로, 경관녹지, 공공공지) 사업기간 변경
(당초)2025년 12월 31일 → (변경)2026년 12월 31일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(변경없음)
8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
구분	내용	구분	내용
구역면적	148,912㎡	대지면적	112,797㎡
건축면적	23,183.4933㎡	최고높이	97.35m
연 면 적	440,642.8077㎡	세 대 수	3,048세대
건 폐 율	20.55%	주 용 도	공동주택(아파트)
용 적 률	272.55%	동수/층수	29개동/지하5층~지상34층

9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 (변경없음)

주택의 형 태	동수	세대수	주택규모별 세대수(전용면적기준, ㎡)								
			39.9436 (39)	59.7800 (59A)	59.9662 (59B)	75.4754 (75A)	75.4599 (75B)	75.3432 (75C)	84.9746 (84A)	84.9982 (84B)	84.9425 (84T)
계	29	3,048	214	227	320	556	401	208	813	259	50
분 양	28	2,834	-	227	320	556	401	208	813	259	50
임 대	1	214	214	-	-	-	-	-	-	-	-

10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(변경없음)
11. 다른 법률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의제사항

가.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(변경없음)

나.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(변경없음)

다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 규정에 의한 인·허가 등의 의제사항(변경없음)
12.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 (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
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제91조 규정에
의한 고시 사항) (변경)

